

시.도지부 관리규정

(사)대한철인3종협회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시·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시·도협회는 지부이다.

제3조 각 시·도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각 시·도지부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을 선출, 파견한다.
2.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5조 각 시·도지부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수지예산안 및 수지결산서를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사·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전국규모 선수권 대회는 본협회의 승인없이 개최할 수 없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6조(시·도지부 대의원 총회와 집행부)

①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시, 군, 구지부별 대의원 각 1인
- 2)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명
- 3)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사회인군, 학교군)

② 전항 제1호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한다.

- 1) 등록단체(팀)별 대의원 약간명
- 2) 시·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명
- 3) 시·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은 시·도지부장이 소집한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학생 및 현역선수는 대표자회의의 대표 및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4)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례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집행부의 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이 사 28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 사 2인
- ④ 기타임원
대 의 원: 각지부별 1인
위촉임원: 고문 약간명
 참여 약간명
 위원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임임원의 2/3는 등록단체 임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선임임원에 선출된 후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 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④ 대의원은 등록단체의 장이 당해 등록단체의 임원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
- ⑤ 감사는 2인중 1인은 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⑥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⑦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의 협회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경우, 본협회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 ⑧ 선임임원은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도체육회에 가맹이 되지 않은 지부는 본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본협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준하되 시도지부장은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4장 시도체육회 가맹

제11조 시도지부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에 가맹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도지부는 각 시도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도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단 시도체육회 미가맹 지부는 해당 지부 규약등 제반규정을 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도지부는 시도체육회 가맹사항을 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시도지부 산하 각급지부

제14조 각 도지부는 산하단체로써 시, 군, 구지부를 둘 수 있다.

제15조 시·도지부 산하단체는 본협회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부에 준하여 조직을 한다.

제16조 시·도지부 산하지부는 본협회과 시·도지부에 대하여 본규정의 제4조와 제5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7조 시·도지부 산하지부의 기구와 임원은 본규정 3장에 준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약에 따른다.

제19조 본 규정은 1999 년 1 월 16 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